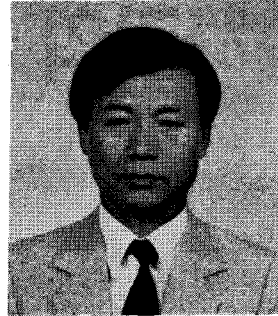


# 營業秘密 保護를 위한 不正競争防止法 改正



黃 義 昌  
〈特許廳 調査課長〉

## 목 차

- I. 영업비밀이란?
- II.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 III.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에
- IV.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주요내용
- V. 이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처 방안

〈이번호에 全載〉

### I.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이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업이 개발, 축적한 기업 특유의 정보로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 또는 경영상의 정보의 총칭으로서 통상 우리들에게는 노하우(know how)나 기업비밀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트레이드 시크릿(Trade secret), 재산적 정보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위 산업스피아가 노리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들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생산기술, 제조설비, 각종 설계

도, 공정 메뉴얼, 제품규격, 연구개발 데이터, 성분원료의 배합비, 고용의 명부, 원재료 구입처 리스트, 재무 데이터, 판매 메뉴얼, 재고관리 정보, 신규사업계획 정보등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에 있어서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II.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서 이의 개발, 축적에는 많은 투자와 상당한 시간, 오랜 연구노력이 수반되는 영업상의 이익임으로 만일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어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영업정보의 축적이 어렵게 되므로 국가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개

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경쟁업체적인 경쟁력 우위를 자체 개발이나 정당한 댓가지불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활발한 거래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경제악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쟁질서 파괴행위를 예방하고 기업간의 개발적 경쟁을 유도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통한 산업경쟁 향상을 위해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셋째, 첨단산업분야의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아직 첨단산업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고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업비밀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약할 경우, 선진공업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높임은 물론 기술 제공을 기피하는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의 신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을 보다 촉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다음 대외적 측면에서도, 1986년 7월 한·미 통상관계 지적 재산권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미 영업비밀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GATT / UR Trips (무역관계 지적 재산권 협상)에서도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채택이 주요 의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영업비밀 보호의 국제적인 보호 추세에 부응하고 대외 통상마찰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제에서는 이와같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다고만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

상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인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현실을 이 법에 신설하였다.

### III.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를 보면, 英美法系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보통법(common law)에 의한 관례를 중심으로 보호하여 왔으나, 미국의 경우는 1979년에 이르러 모델법인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을 제정하여 1990년 5월 현재 32개주에서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大陸法系, 국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영업비밀 보호조항을 마련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홍콩,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등에서 까지도 英·美의 common law法理를 바탕으로 관례에 의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injunctive relief)을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 IV.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주요내용

#### (1) 영업비밀의 정의(法 第2條 第2號).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法 第2條 第3號).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수한 형태인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6가지로 유형화하여 규정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절취, 欺罔, 脅迫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탐지행위(가목)와 기업체 종사원 등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행위(라목)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이 기본유형의 침해행위에 따르는 사후적 관여행위를 각각 두 가지씩 규정하고 있다.

즉, 부정한 탐지행위(가목)나 비밀누설행위

(라目)가 있었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나目)과(마目)에 규정하였고 또한 부정한 탐지행위(가目)나 비밀누설행위(라目)를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취득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고 등에 의하여 알게된 후부터(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후부터)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다目)과(바目)에 규정하고 있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救濟 수단(法 第10條 내지 第12條).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개개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민사상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토대로 한 손실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적 구청수단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불법행위로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청수단의 特別으로서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 등의 폐기, 제거 청구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선의취득자 구제(法 第13條) 및 시효(法 第14條).

영업비밀에 관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으며, 아울러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영업비밀에 대한 벌칙(法 第18條).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영업비밀 보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있다.

(6) 시행일 및 경과조치(法 附則).

이 법은 공포일(1991년 12월 31일 法律 第4478號)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1992년 12월 31일) 내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 V. 이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처방안

이 법은 영업비밀에 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정하고 실제 운용은 기업체가 하게된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서도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비교적 익숙하지 못한 영업비밀의 법적 개념과 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여 입법 취지를 벗어난 권리 주장으로 인한 濫訴 등 법 운용상의 혼잡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법의 정신을 잘 파악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어대책은 물론 타사로부터도 영업비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어 전략도 아울러 마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사는 자사의 특성에 맞는 법적 정보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이나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술도입 계약 취급규정, 영업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등의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의 수단으로서의 사원계약, 고용규칙 등은 사회질서에 어긋 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 하므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Guideline) 내지 판례 연구 등을 위하여 산업계는 물론 정부나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의 상호협력 이 크게 필요할 것이다. <♣>